

1996. 3.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 총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총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총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총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총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총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총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조례명 | 제안일자 | 회부일자 | 상정일자 | 제안설명자 |
|-----------------------------|------------|------------|---------------------------------------|-------|
|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 '96. 3. 6. | '96. 3. 7. | 제1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96. 3. 15) | 시정과장 |
|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 ' | ' | ' | ' |
|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 ' | ' | ' | ' |
|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 | ' |
|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 ' | ' | ' | ' |
|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 | ' |
|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 | ' |
|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 | ' |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1) 제안이유

- 시정발전 및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 투자유치와
관로개척, 관광안내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울
연락사무소를 두고자 함.

2) 주요골자

- 연락사무소 위치는 서울특별시내로 하고, 사무소의 관장업무를 규정하며,
- 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함.

나.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시의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운용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건설도시국 수도과 폐지 ⇒ 건설도시국 공기업과 신설
- 총무국 시민과 ⇒ 총무국 시민생활지원과로
- 총무국 민방위과 ⇒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로
- 건설도시국 녹지과 ⇒ 건설도시국 조경과로
- 건설도시국 하수과 ⇒ 건설도시국 수자원관리과로
- 실과분장사무의 조정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양곡특별회계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과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기술분야 및 재난관련분야,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분야의 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인력을 감축, 조정하여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 및 인력감축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정원조정을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본청 504 명 ⇒ 554 명 (증 50명)

-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 7 명 (증 7명)
- 신설기구 소요인력 23 명 (증 23명)
- 유보정원 20 명 (증 20명)

○ 직속기관 133명 ⇒ 129 명 (감 4명)

○ 사업소 157명 ⇒ 153 명 (감 4명)

○ 읍면동 549명 ⇒ 514 명 (감 35명)

근)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라 충주위생환경사업소와 앙성위생환경사업소가 통폐합됨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충주위생환경사업소 관장사무에 '방류수 수질관리 및 시험운영'을 추가

○ 부칙으로 앙성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폐지 규정의 명시

마)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업무가 환경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중복되는 업무를 삭제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상수도보호구역관리' 사무를 삭제함.

▣ 1.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 조직개편에 따라 동사업소 소장의 직급이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계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직제규칙을 폐지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소장지급 5급(지방행정사무관) ⇒ 6급(지방행정주사, 지방토목주사, 지방기계주사 복수직으로 조정)
- 사업소직제규칙 폐지

▣ 2.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 여러종류의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사업소의 명칭을 시설규모에 맞게 개정하기위함.

2) 주 요 골 자

- 조례 제명을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로 개정
- 사업소명칭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를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로 하고, '사무소'를 '관리소'로 개정함.

▣ 3.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 시민들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쉽도록 사업소 명칭을 개정코자 함.

2) 주 요 골 자

- 조례 제명을 충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로 개정
- 사업소 명칭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를 '충주시여성회관'으로 '상담소'를 '여성회관'으로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가. 충주시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앉아서 법,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가고 살아남기 위하여는 조례 제정안과 같이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조례안은 바람직할 것임을 전제하면서,
- 앞으로 관장업무는 물론, 직제인력에 대하여 타사업소와 같이 경직된 운영 보다는 탄력성 있게 운영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 조례안과 같이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인 연락체계 확립 및 민간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중앙수혜증대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나.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공기업과 신설은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기대되며,
- 시민과를 시민생활지원과로 명칭변경과 아울러 민원처리계를 생활지원계로 명칭변경 및 업무분장을 시민들의 불편불만이 많은 각종 기초생활민원을 접수, 신속히 조치하는 체계를 갖추므로서, 피부에 와닿는 봉사행정이 실현 될 것으로 보며,
-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 녹지과를 조경과, 하수과를 수자원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므로서, 지방자치시대와 현실에 부합되고 관장사무에 알맞도록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실국간 사무분장조정등 개정조례안은 전반에 걸쳐 시기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우리시에 근무하면서 국가고유사무를 담당하던 원예유통과 양정계 직원 7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함은 적절한 사안이라고 보며, 지방직 전환후 소요 인건비는 총전과 같이 국비인 양곡특별회계에서 지급하게 됨.
- 시민생활지원 및 재난관리등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의 증설로 인력증원은 필수요인으로 분석되며, 사업효과가 미비한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행정수요가 감소된 분야의 기구 및 인력을 통폐합 또는 감축하였음은 인력관리차원에서 적정을 기한 것으로 평가되며,
- 본청 유보정원을 제외하면 실제 11명이 감소된 정원이며, 신설기구의 증원 내지 읍면동의 정원감축 등 상정된 본 조례안은 효과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사료됨.

라.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유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양사업소의 기구를 하나의 사업소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양성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함과 더불어 '방류수 수질관리 및 시험실운영'의 관장사무를 추가 규정하므로서,
- 사업소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기대되며, 1개 기구로 통합 및 충주시 위생환경 사업소조례의 보완정비 차원의 개정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1.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상수도보호구역관리' 업무가 '95. 5. 18일자 직제규칙 제73호에 의거 상수도사업소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되면서, 동시에 상수도사업소의 관장 사무에서 폐지되었어야 하나 이행되지 않으므로서, 금번 충주시상수도 사업소설치조례의 관장사무중 '상수도보호구역관리'사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2.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조직개편에서 소장직급이 행정 5급에서 6급(행정, 토목, 기계등 복수직)으로 조정되면서, 계 직제가 없어지고 직제규칙이 폐지되는 것으로서,
- 본 조례 개정시 사업소의 자율적 업무수행능력배양, 지역계획과와의 상호 적정한 업무배분 및 동사업소에 대한 업무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1.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종합운동장뿐 아니라 실내체육관, 칠금잔디구장 및 테니스장, 가금체육공원 등 여러종류의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기구의 명칭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하여 동사업소의 명칭을 시설종류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2.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제명과 더불어 조례안의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 명칭을 '충주시 여성회관'으로 전 조목을 개정하므로서 관장사무의 현실에 맞도록 한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답변요지

가).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질 의]

- 서울사무소 개설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5급 1명, 6급 1명, 타자수 1명으로 원만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 답변

-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중앙 또는 각 부처에서 국가사업을 계획하는 기초단계시 빠른 정보를 입수하여 다방면으로 해결토록 노력하므로서, 기초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음.

[질 의]

- 서울연락사무소 개설전에 현지여건 및 실현가능성등을 보다 상세하게 조사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공감한 후에 신중을 기하여 조례안을 제출할 용의는?

☞ 답변

-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후에 여러가지 자료를 통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도록 노력 하겠음.

[질 의]

- 서울연락사무소 개설로 중앙에만 의존하지 말고 타시군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해외전진기지를 개설할 용의는?

■ 답변

- 서울사무소에서 각 부처등의 빠른 정보를 입수하여 시로 연락하면 시장이 직접 현부처를 방문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해외전진기지 개설관계는 시장의 복안이 있으며 총선후 의회에 보고예정임.

[질의]

- 제3조 제6항을 기타 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등으로 조문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 답변

- 수정 의결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한시기구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 답변

-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필요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면 됨.

나.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질의]

- 현 조직개편안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것인가?

☞ 답변

- 현 실제정비안은 내무부 권장사항은 있었으나 지침은 아니며, 시자체 계획에 의거 업무형편에 따라 조직정비안을 마련한 것임.

[질의]

- 과는 2개계이하, 국은 3-4개과 이하이면 폐지되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축산과의 경우 1개계를 증설하여 과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 답변

- 충주시가 도내에서 축산농가 및 가축두수가 가장 많은데도 타시군에 직제가 있는 축산진흥계가 없으며, 따라서 업무량등을 판단하여 계를 신설하는 것이지 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님.

[질의]

- 공중, 식품위생계를 통합하여 1개계로 직제를 조정하고, 지도단속을 하는 위생감시원을 두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답변

- 행정조직정비 기본지침에 의하면 계, 과, 국별로 관리하기 적정한 숫자를 두도록 되어 있고, 위생업무분야가 매우 광범위하여 2개계로 조정한 것임.

[질의]

- 녹지과를 조경과로 변경할 경우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인상을 주므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답변

- 산림과, 녹지과의 명칭은 같은 맥락이며 산림과는 산림업무를 전담하고, 녹지과는 도시공원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명칭상 문제가 있어 조경과로 조정하였음.

[질의]

- 시·군통합으로 행정조직이 너무 비대하므로 향후 과감한 조직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 답변

- 현행 조직정비안의 인원감축이 시민의 바램에 미비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행정수요에 맞도록 연구 노력하여 간소한 인원이 되도록 하겠음.

[질의]

- 행정기구 명칭중 수도과를 공기업과로, 시민과를 시민생활지원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녹지과를 조경과 등으로 변경될 때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 답변

- 도단위에서도 공기업과로 사용하며, 수도사업 자체가 공기업 사업임. 또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전국 표준기로서 명칭변경이 불가하며, 시민과, 녹지과 명칭은 수정 의결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질의]

- 면단위 정원을 인구수에 비례하여 조정하였다고 하지만, 상모면은 상주인구보다 유통인구가 많은데 3명을 감원한 이유는?

☞ 답변

-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상모면은 관광지 등 특별한 경우로서, 타지역보다 3명이 많은 25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음.

[질의] ○ 유보정원 20명의 활용계획은?

☞ 답변 ○ 유보정원 20명은 미발령으로 임용을 하지 않는 것임.

[질의]

- 행정, 농업, 세무, 토목의 각 직렬별로 전문화가 필요한데 기술직렬에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규정한 것은 모순이 아닌지?

☞ 답변

- 면의 경우 총무계장, 사회복지계장, 부면장, 면장등이 행정, 농업의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므로 농업직렬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질의]

- 읍·면동의 35명 인원축소와 관련하여 읍면의 재무계를 폐지할 경우 책임감이 결여되어 지방세 체납액 징수등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

- 읍·면·동의 35명 인원축소와 읍·면의 재무계 폐지는 무관하며, 본청의 세무 전산화로 읍·면·동에서는 부과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업무성격상 계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조정하였음.

[질의]

- 업무의 전산화등으로 인원을 축소하여 경영수익사업 방향으로 인력을 유도할 의향은?

☞ 답변

- 현재 집행부에서 몇가지 경영수익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시행단계에 이르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음.

극사.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없 음.

극사.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없 음.

극사.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질 의]

- 수안보개발사업소가 업무량에 비해 소장직급이 높다고 판단한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 답변

- 사업소 업무성격상 6급제장이 업무를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임.

사사.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없 음.

◇사.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없 음.

5. 수정안 요지

□ 조례명 :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 수정안 내용

- 안 제2조(위치) 중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과천시 내에 둔다'로 하고,
- 안 제3조(업무) 중 제6호 '기타물품의 염가구입 협의등'을 '기타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등'으로 하며,
- 안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안 '제1조'로 하고,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한시기구에관한경과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의 존속기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 제정안 | 수정안 |
|--|--|
| 제1조(생략) | 제1조(원안과같음) |
| 제2조(위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 제2조(위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과천시 내에 둔다. |
| 제3조(업무) 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5. (생략) 6. 기타물품의 염가구입 협의등 | 제3조(업무) - - - - - 1. -5. (원안과같음) 6. 기타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등 |
| 제4조-제6조(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 제4조-제6조(원안과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에관한경과규정) 이 조 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의 존속기한 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6. 심사 결과

- | | |
|----------------------------|--------|
| 가.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 수정안 가결 |
| 나.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 라.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마.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바.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사.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아.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7. 불임

- | |
|----------------------------|
| 가.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
| 나.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라.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마.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바.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사.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아.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충주시의 시정발전과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홍보, 투자유치, 판로개척, 지역간교류, 관광안내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이하 "사무소"라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3조(업무) 사무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의 국제교류, 협력 및 통상지원
2.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자료, 정보수집 및 지역현안문제의 신속한 처리
3. 기업창업지원안내 및 투자유치
4. 농산물 판로개척지원 및 안내
5. 관광지개발안내 및 관광객 유치홍보
6. 기타 물품의 염가구입 협의등

제4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무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기정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획실) 제2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5조(충무국) 제1항 중 "시민과"를 "시민생활지원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제5호 중 "임면"을 "임용"으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0. 국제협력업무

11. 공무원해외연수, 여행 교류에 관한사항

같은조 제7항의 "시민과"를 "시민생활지원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9.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보수

10. 기초생활환경 순찰 및 감시

같은조 제8항의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한다.

제6조(사회경제국) 제3항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제8조(건설도시국) 제1항 및 제5항 제7항 제8항 중 "녹지과"를 "조경과"로 "수도과"를 "공기업과"로, "하수과"를 "수자원관리과"로 하고 같은조 제7항 중 제11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1. 공영개발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12.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13. 빅지개발공단조성 및 도시재개발 사업

14.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주택 및 공장건설 사업

15. 기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에 관한경과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실. 국. 담당관. 과증 시정과. 조경과. 수자원관리과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증 "504"명을 "554"명으로, 같은조 제3호증 "133"명을 "129"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4호증 "157"명을 "153"명으로 하며, 같은조 제5호증 "549"명을 "514"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7명(행정6급 1, 행정7급 1, 행정8급 2, 행정9급 1, 농업9급 1, 기능(사무)10등급 1)은 '96. 1. 1일부터 적용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업무)중 제4호를 제5호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류수질 관리 및 시험실 운영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양성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관장사무)중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소장) 제1항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를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로 한다.

제1조(설치)중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를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로하고 "사무소"를 "관리소"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중 "사무소"를 "관리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를 "충주시여성회관"으로 한다.

제1조(목적)중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를"을 "충주시여성회관을"으로하고, "상담소"를 "여성 회관이"으로 한다.

제2조(위치) "상담소는"을 "여성회관은"으로 하고 "(충주시여성회관내)"를 삭제한다.

제3조(업무) "상담소는"을 "여성회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및 제5조중 "상담소"를 "여성회관"으로하고, 제4조, 제5조중 "소장"을 "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